



석유협회, 주유소광고물 단속 완화 건의

주유소 옥외광고물에 대한 별도 세부사항 신설도 요구

석

유협회는 최근 각지방관서가 내무부 시행 행정절차 간소화방침에 따라 전국 주유소에 대해 일부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이 이동하면서 찾아야하는 주유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 및 청원서를 정부당국에 잇따라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이 건의·청원서에서 주유소 안내 사인물은 지난 1992년 7월 1일부로 통상산업부가 상표표시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주유소의 안내 폴사인(기둥을 이용한 간판), 상호간판, 캐노피(주유시설을 덮고 있는 지붕)등을 해당 정유사의 특정상표로 통일, 해당 정유사의 책임 아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필수광고물로서 외국에서도 주유소내 광고물을 폴사인, 캐노피, 캐노피 기둥 부착 광고, 건물 상부 광고등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각 지방관서들이 벌이고 있는 주유소 광고물 단속을 현재 내무부가 의견수렴중인 「옥외광고

물등 관리법 개정법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토록 대내조치를 취해 주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주유소 옥외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유협회는 주유소 안내 폴사인의 경우,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접도구역내 설치규정을 두어 당해 도로관리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대해 이 경우 동일한 광고물에 대해 2개 부서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정부의 행정간소화 방침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노피 간판의 경우, 대부분의 주유소가 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 하나의 가로형 간판으로 취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캐노피 간판에서 한면을 하나의 가로형 간판으로 간주할 경우, 한 업소당 최대 3개까지 허용하는 현행 법규를 기준할 때 대부분의 주유소가 캐노피 외에 폴사인등 다른 광고물을 일체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다. 이렇게 될 경우 캐노피의 한 면 또는 두면을 바탕색으로 비워두어 보기 흉한 모습을 갖게 되며, 이런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 주유소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시행령에 의거, 담장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하여 주유소 방화벽에 정유사 및 제품명 도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성명·상호·상표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타조항의 내용과 배치되며, 현재 자기 소유 건물벽에 광고물을 인정하는 것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협회는 최근 정유사들이 석유시장 개방과 변화

하는 시대감각에 부응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의 유명 디자인 업체에 의뢰, 현대감각에 맞는 칼라와 디자인으로 주유소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마당에 현행 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원낭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유사들의 원활한 투자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법 적용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법상의 공작물축조규정을 폐지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제로 일원화시켰다. ㉠

영어해설

MSDS제도란

산업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신소재와 신물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자료없이 유통, 사용되고 있어 직업병 발생 및 폭발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화학제

제41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 화학물질은 폭발성, 산화성, 극산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속성물질 등 6가지 물리적 위험물질과 고독성, 독성, 유해, 부식성, 자극성, 과민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등 9가지의 건강장해물질과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등이다.

선진국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미국에서는 약 57만 5천여종의 기존 화학물질과 매년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제조·수입되고 있어 약 3억 2천만명의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잠재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해 근로자는 각종 폐질환, 암유발, 심장질환 등 매우 중대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며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有害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위해 제품위험성등을 설명해 주는 정보자료

품에 대해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사항등을 설명해 주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MSDS를 작성,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토록 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부착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MSDS자료를 제출토록하는 등 각종 규제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노동성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지난 85년 유해정보공개법(Hazard Communication)을 제정, 화학제품의 제조자·수입자가 해당 화학제품에 관한 유해위험성을 평가해 MSDS자료를 작성, 경고표지부착, 교육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MSDS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MSDS의 작성 및 비치, 경고표지부착, 근로자교육방법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MSDS작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서 MSDS 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제도내용 유인물을 제작, 보급하고 유해물질의 올바른 취급방법 등에 대해 공단밀집지역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